

자동차보험 유형별 보상 사례

– 자동차의 소유 명의자의 손해 배상 책임 –

김희중

〈한국자동차보험(주) 자동차보상부 차장〉

자 동차가 인사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으로는 “운행자”가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운행자”는 운전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장소적 이동이라는 운행 이익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는 당연히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 이지만, 위에서 말한 운행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운행자를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에 의한 이익을 얻고 있는 자라고 말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사고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즉 소유자가 일차적으로 운행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피해자들은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소유자를 찾아내고, 그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즉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자동차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든지 설령 일부 권한

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여 운행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예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첫째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명의 대여라고 함)하여 형식상 소유자(명의 대여자) 및 실질적 소유자(명의 피대여자) 양자가 존재하고, 이 경우 형식상 소유자인 명의 대여자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며, 둘째 자동차를 매매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기고 차량 자체를 인도하였으나, 등록 명의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소유 명의는 여전히 매도인 등에게 남아 있는 경우(명의 잔존이라함) 소유 명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매도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이다.(물론 매수인은 당연히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첫째, 명의 대여의 경우에는 소유 명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 대여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 대여 당사자 상호간의 종속 관계 유무, 명의 대여료의 징수 여부, 유류대 ·

수리비 등 차량 관리 경비의 부담 관계, 명의 대여의 동기·목적 등 실질 관계를 종합하여 명의 대여자에게 운행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둘째, 명의 잔존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비록 매도인에게 여전히 등록 원부상 소유 명의가 남아 있더라도 매도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매수인만이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도 매수인과 함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례1>

A가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자기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B에게 부탁하여 B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인사 사고를 일으킨 경우.

B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A로 하여금 B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며, B는 A의 차량 운행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통하여 협동하여 온 것이므로 B도 A와 함께 운행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례2>

A가 B회사에 지입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화물차를 B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지임에 필요한 일부 서류와 함께 그 자동차에 대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고용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미처 B회사에 지임 등록을 하기 전에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화물차는 B회사에 아직 지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B회사는 위 화물차의 운행에 관하여 명의 대여자라 할 수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만일 이 경우, B회사에 지임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B회사는 명의 대여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례3>

A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B회사에서 생산하는 연탄을 운송하게 되어 B회사의 공장내의 차량 운행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B회사 상표를 차량 적재함에 표시하고 운행하던 중 횡단인을 충격, 사망케 하는 인사 사고를 야기한 경우,

이 경우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으로는 B회사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즉 지임의 형태가 아니며, 소유 명의는 A로 되어 있으면서 단지 트럭의 적재함에 B회사의 상표를 표시하여 B회사의 연탄 공장에 들어 오는 많은 차량들의 운행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B회사는 명의 대여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

<사례4>

A는 사고 차량을 B에게 팔



았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 받기 전에 명의 이전 서류와 함께 동 차량을 B에게 인도하여, A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B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채 운행하다가 보행인을 충격한 인사 사고를 일으킨 경우.

A가 매매 계약금만을 영수하고 약정된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면 A는, 최소한 B가 등록 명의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자기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한 B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례5>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은 등록

원부상 소유 명의가 A로 되어 있으나, A는 사고 발생 이전에 벌써 B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받고 차량의 소유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 후 B는 다시 그 차량을 C에게 매도하였는데 C는 동 차량의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다가 보행인을 충격, 사망케 한 인사 사고를 야기한 경우.

이 경우, A는 등록 원부상 소유 명의가 남아 있으나, 매매에 관한 모든 의무(대금, 서류 교부, 차량 인도)를 이행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